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716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11. 24.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12,809,8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09,8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2,809,8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 부과처분

B는 경기도 화성시 C 도로 488㎡, D 도로 806㎡ 증 26,083분의 16,125 지분, E 도로 76㎡를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이 공매되어 B는 2018. 12. 19. 배당금 835,396,315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B는 2019. 2. 27.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2019. 3. 29. 당초 신고 시 환산취득가액 오류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9. 6. 12. B에게 2019. 7. 18.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 458,530,215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B는 위 양도소득세 고지액 중 181,475,660원을 체납하였고, 201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2017. 6. 1. 납세의무 성립) 3,487,940원을 체납하여, B의 원고에 대한 체납세액은 합계 184,963,600원이다.

나. B의 원고에 대한 증여

B의 아들인 피고는 2019. 1. 21. F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제13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2018. 12. 19. 이 사건 배당금을 I조합 기재지점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하고 다음날 같은 지점에 세 개의 금융계좌를 신설하여 각각 50,000,000원(계좌번호 2 생략), 30,000,000원(계좌번호 3 생략), 420,000,000원(계좌번호 4 생략)을 예탁한 후, 그중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에서 2019. 2. 13. 223,059,715원을 수표 발행 및 현금으로 출금하여,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9. 2. 15.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이었던 J에게 수표로 전세금

153,000,000원을, 공인중개사 K에게 수표로 1,000,000원을, 매도인 L에게 잔금 66,000,000원을 수표로 각 지급함으로써, 위 지급금액 합계 22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재산감소를 초래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체납세액 합계 185,963,60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성립해 있었으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의 자력 상태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일인 2019. 2. 15. 당시 B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였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다.

						(단위 : 원)
구분	종류	내역		가액	입증자료	
적극재산 소계	예금잔액	I	(계좌번호 1)	계당금수령	5,879,555	갑 제5호증
	예금잔액	I	(계좌번호 2)		50,000,000	갑 제5호증
	예금잔액	I	(계좌번호 3)		30,000,000	갑 제5호증
	예금잔액	I	(계좌번호 4)	과	390,000,000	갑 제5호증
	부동산	경기도 화성시	C	토지	99,503,200	갑 제9호증
	부동산	경기도 화성시	D	토지	101,600,173	갑 제9호증
	부동산	경기도 화성시	E	토지	15,496,400	갑 제9호증
	소계(①)				692,479,328	
소극재산 소계	조세채무	국세			485,289,215	갑 제1호증
	소계(②)				485,289,215	
순자산(③) (①-②)					207,190,113	
이사건 부동산 관련 현금중여액	현금				220,000,000	
	소계(④)				220,000,000	
	채무초과(③-④)				△12,809,887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요,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는 이로써 자신의 일반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가 아니라 B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B의 사해행위에 관하여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에 2019. 2. 15. 체결된 증여계약은 12,809,88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809,887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단서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본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가액배상청구는 장래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 단서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민사법정이율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대현